

이민구의 강화도 탈출담 연구

김일환*

- 목 차 -

- I. 전후 천리와 이민구의 처벌
- II. 살아남은 자의 슬픔, 수신인 정세규
- III. 권한과 책임, 김경진과 장신
- IV. 死則生의 자세와 奇緣, 봉림대군
- V. 김상헌이라는 권위를 넘어서기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만년의 이민구가 친구 정세규에게 보낸 편지[答鄭判書書]를 분석하였다. 만년의 이민구는 오랜 친구인 정세규의 편지에 답장을 하는 방식으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되는 과정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음을 토로했다. 이민구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물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는 亡者이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다수였다. 신중한 어조의 고백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온갖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구성했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다. 전반부에서는 적군이 상륙한 뒤에 江華府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해명했다. 후반부에는 남한산성의 포위를 뚫기 위해 전진하다 전사한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지만, 안전한 강화도를 벗어나기 싫어 임지로 떠나지 않았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였다. 생존에 해명할 때는 우연과 천우신조를 강조했고, 후반부에는 김상헌의 묘도문자가 갖는 권위를 넘어서고자 시도하였다. 이민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도 행적을 해명한 것은 이민구의 재주와 능력을 인정한 측에서 그를 서용하고자 하나 강화도에서 저지른 잘못과 이후의 그릇된 처신이 문제가 되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 이민구, 정세규, 「답정판서서」, 병자호란, 강화도, 김상헌

I. 전후 처리와 이민구의 처벌

국가가 전쟁에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침략을 감행한 경우에는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침략을 당한 쪽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전쟁이 나게 만든 사람이 문제인가, 국경에서 적을 막아내지 못한 사람의 잘못인가, 개별 전투에서 진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가? 이 모든 행위의 주체들을 임용한 사람, 즉 최고권력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가? 병자호란이 종결된 직후의 조선이 이런 논쟁에 휩싸였다. 누구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1636년 2월 2일 청 태종[淸汗]이 귀환한 데 이어, 8일에는 九王이 소헌 세자와 봉림대군을 인질로 데리고 철군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10일, 인조는 우선적으로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관원[握兵之官]을 문제 삼았다. 서로도원수 金自點(1588~1651), 제도도원수 沈器遠(?~1644), 부원수 尹璠(1581~?), 강원도관찰사 趙廷虎(1572~1647)는 남한산성으로 즉각 달려오지 않은 죄를, 부원수 申景瑗(1581~1641)에게는 항복하여 목숨을 구걸한 죄를 물었다. 三南의 관찰사와 병사들도 교대시킨 뒤에 붙잡아와 조사하라고 하되, 다만 충청도관찰사 鄭世規(1583~1661)만은 죄가 용서할 만하다면서 직을 유지하게 하였다.¹⁾ 이튿날 양사 합계로 檢察使 김경징(1589~1637), 檢察副使 이민구(1589~1670), 江都留守 張紳(1595~1637), 경기수사 申景珍, 충청수사 姜普昕(?~1637)에게 江都를 지키지 않고 도망하느라 묘사주와 빈궁과 원손을 버린 죄, 섬에 가득한 생명들이 살해되거나 약탈당하게 한 책임을 물어 벌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함경도관찰사 閔聖徽(1582~1647), 전라도관찰사 李時昉(1594~1660), 경상도관찰사 沈演(1587~1646), 황해도관찰사 李培元(1575~1653), 북병사 李沆(?~1637), 남병사 徐佑申, 전라병사 金俊龍(1586~1642), 황해병사 李碩達(1603~1639), 경상좌병사 許完(1569~1637), 충청병사 李義培(1576~1637)도 국문할 것을 요청하였다.²⁾ 2월 15일 인조는 김자점·심기원·윤숙은 유배형에 처하고, 신경원은 삭탈관직시켰다. 하지만 양사의 세 차례에 걸친 합계에 김자점은 絶島 정배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먼 곳으로 유배보내게 되어 처벌이 강화되었다.³⁾ 2월 19일에는 시임 관료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영의정 金瑬(1571~1648)·좌의정 洪瑞鳳(1572~1645)·우의정 李聖求

1)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10일(경진).
 2)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11일(신사).
 3)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15일(을유).

(1584~1644)·병조판서 申景禎(1575~1643) 등이 주도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를 물어 斥和論者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히 ‘합당하지 않은 표현’을 문제 삼아 尹煌(1571~1639) 등을 특정하였다. 결국 兪樸(1599~1655)·洪瑑(1606~1665)·兪榮(1607~1664)는 정배되었고, 李一相(1612~1666)은 절도 정배, 趙綱(1586~1669)·金壽翼(1600~1673)·申恂(1598~1662)은 문외출송의 벌을 받았다.⁴⁾ 하지만 위에 언급된 인물들 가운데 사형을 당한 이들은 모두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로 귀결되었다. 3월 강화유수 張紳(?~1637)이 가장 먼저 사형을 당했는데, 공신이라하여 자결하는 은전을 입었다. 9월에 검찰사 김경징(1589~1637)과 충청수사 강진흔이 사형을 당하였다.

‘부’검찰사였던 이민구(1589~1670)는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시종 일관 검찰의 책임은 김경징에게 있었고, 강화도의 수비 책임은 장신에게 있었기에, 자신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처지였다고 변명했다.⁵⁾ 게다가 이민구의 형은 시임 병조판서 이성구였는데, 이민구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성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류·김경징 부자 가운데 한 명만 처벌한 예와 달리 두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이민구는 1637년 윤4월에 평안도 영변의 鐵甕城에 유배되었고, 이후 1643년까지 7년간 그곳에서 지내다가, 충청도 牙山縣으로 이배되었다. 1647년 4월 사면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1649년 직첩이 환급되었으나,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1670년 2월에 죽었는데, 1650년 7월·1657년 5월·1661년 1월·1665년 9월·1667년 3월에 각기 서용되었으나 臺諫들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죄도 컸지만, 영변

4)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19일(기사).

5) 뒷날 이민구가 10년 동안의 유배형을 마치고 사면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죄가 김경징·장신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조실록』 인조 27년 3월 10일(기사).

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청나라의 통역 鄭命守(鄭命壽, ?~1653)⁶⁾의 처제를 첩으로 들인 일이 문제가 되었다.⁷⁾ 청나라의 힘으로 곤란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민구는 부친 李睟光(1563~1628)으로 대표되는 가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4년 만에 사마시와 문과를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의 뛰어난 문학적 재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南人이지만 西人 정권에서 중용되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었기에 내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그런 그가 병자호란에서 ‘社稷의 죄인’이 되어 30년이 넘는 후반생을 울울하게 지내게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만년의 그가 인생의 분기점이 된 강화도 함락의 그날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구는 영변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과거를 소화하는 시를 남겼고, 「浦口舟子傳」이라는 傳을 통해 강화도가 함락되던 그날의 행적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자료는 이민구가 만년의 정세규에게 보낸 답장⁸⁾이다. 거기에는 ‘그날’의 일들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고,⁹⁾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주를 이룬다. 굳이 편지/답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까닭은 무엇이며, 수신인이 왜 정세규인가,

6) 당시 정명수의 활동과 위상에 대해서는 김선민, 「朝鮮通事 글마흔, 淸譯 鄭命壽」, 『명정사연구』 41, 명정사학회, 2014, 37~65쪽.

7) 둘 사이에 萬揆, 億揆, 末揆 등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만규는 요절했다. 정만호, 「해제」, 『국역 동주집』, 한국고전종합DB.

8) 李敏求, 「答鄭判書書」, 『東州集』 文集 卷1.

9) 구범진은 병자호란을 연구하면서 강화도 함락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이민구의 「答鄭判書書」는 趙翼의 「丙丁記事」의 함께 羅萬甲의 「丙子錄」이나 南波의 「南漢日記」에 실린 「江都錄」 등의 ‘가벼이 신뢰할 수 없는’ 傳聞 자료와 대별되는 ‘현장 목격담’으로 취급하여, 字句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구범진, 「병자호란 시기 청군의 강화도 작전-목격담과 조식조류 추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전황의 재구성」, 『한국문화』 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b), 228~239쪽;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의 전쟁」, 까치, 2019, 165~219쪽. 다만 구범진은 이민구의 ‘증언’이 나만잡이나 남급의 사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필자는 문제의 편지가 강화도 함락 당시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철저하게 해명의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잘못과 해명하고자 했던 오해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된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구의 삶과 시를 중심으로 한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부친 이수광과 스승인 申欽(1566~1628)을 바탕으로 造化와 折衷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론¹⁰과 삶이 사이면서 시로 삶을 정리한 방대한 작품 세계¹¹, 남인 시맥에서의 위치¹², 아산에서의 유배 생활¹³과 1631년의 금강산 유람¹⁴, 서인 申翊聖(1588~1644)과 북인 許畬(1585~1659) 등 당색을 넘어서는 교유¹⁵에 대한 논문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이민구의 후반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민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모두 수렴하였다. 아울러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있던 일을 다룬 선행 연구, 즉 강화도 함락에 대한 조선사¹⁶와 중국사 전공자¹⁷들의 연구, 예조판서였던 趙翼(1579~1655)의 생환담¹⁸, 강화도 함락에 대한 문학적 기억을 다룬 연구¹⁹ 등을 참조하였다.

-
- 10) 김영주, 『東州 李敏求의 文學論 研究』, 『동방한문학』 20, 동방한문학회, 2001.
 - 11) 박수진, 『東州 李敏求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이남면, 『東州 李敏求의 生涯와 詩世界』, 고려대 석사논문, 2006, 5~32쪽; 유명식, 『東州 李敏求의 詩文學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2017.
 - 12) 부유섭, 『東州 李敏求와 南人詩脈의 전개』,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 13) 이남면, 『아산의 유배문학: 李敏求의 『牙城錄』』, 『우리文學研究』 41, 우리문학회, 2017.
 - 14) 오승준, 『東州 李敏求의 한시 연구 - 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41, 근역한문학회, 2015; 김영수·유명식, 『東州 李敏求의 『東遊錄』 研究』, 『民族文化研究』 6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 15) 유명식, 『東州 李敏求의 交遊詩 研究-樂全堂 申翊聖과 東岡 許畬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3, 우리한문학회, 2015.
 - 16) 허태구,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 金慶徵 폐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허태구, 『『江都志』와 『重訂南漢志』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 검토』, 『규장각』 5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17) 구범진,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과 청군의 전력』, 『동양사학연구』 141, 동양사학회, 2017(a); 앞의 논문, 2017(b). 이는 구범진, 앞의 책, 2019으로 수렴되었다.
 - 18) 이근선, 『浦渚 趙翼의 『丙丁記事』 一考』,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018.
 - 19) 정환국, 『丙子胡亂時 江華관련 실기류 및 夢遊錄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3, 한국한문학회, 1999; 김일환, 『병자호란 체험의 『再話』 양상과 의미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0; 김경녀,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인조의 기억과 '대항기억'으로서의 <강도몽유록>』,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이민희, 『전란을 기억하는 한 방식으로서의 '극적 표현'과 전

II. 살아남은 자의 슬픔, 수신인 정세규

6년 7개월 동안 영변에서 위리안치 생활을 하던 이민구는 1643년 11월 30일 충청도 아산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3년이 지난 1646년 8월 한가위를 앞둔 어느 날, 이민구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긴 시를 한 편 읊었다. 아산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다던 친구 조경이 병이 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서²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비들과 사귀었는데, 개중에는 꺾어할 수 있는 다섯 살 연상부터 아버지로 대접해야 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들 중 절반은 이미 죽었고, 낙착한 이민구와 소식을 주고받은 사람은 69명에 불과했다. 이민구는 영변 유배 생활 동안 쓴 시집 『鐵城錄』을 넘겨가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헤아리고는, 그 가운데 벌써 32명이 죽었다고 탄식하고 있다.²¹⁾ 그 10년 동안 시 친구[詩伴] 6명 중 4명, 술 친구[酒伴] 8명 중에 4명이 죽었다.²²⁾ 그 가운데 신익성, 박미, 이명한, 이소환 등은 돌림병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²³⁾ 1647

란 서사의 의미-강화 소재 병자호란 서사 『江都夢遊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20) 李敏求, 『東州集』 詩集 卷10, 「牙城錄三」, 「野飲歸壘龍州見和禪韻」, “歸舍衰顏着酒痕, 瓊瑤入手破昏昏. 郢中高唱誰堪和, 河上遺經獨自翻. 天霽長風吹海淨, 雲開落日射江軍. 沈痾却却扁舟興, 軒蓋何曾避席門. 【被店乘舟枉之約云】”

21) 李敏求, 『東州集』 卷10, 「牙城錄(三)」, 「感友篇【并序】」, “余早遊士林, 所取友甚博, 率皆肩隨以上, 至年倍者, 亦肯折輩行與交, 徵逐無虛日, 甚相樂也. 荏苒二三十年, 長者皆老死, 中更災厄, 其少者亦無祿夭枉, 死已過半矣. 逮余西遷, 屬搶攘流播, 窺身四方. 既稍定, 始問關通書問死生, 咸以文字相聞, 凡七易陽秋, 得六十九人少矣. 近於暇隙, 偶取『鐵城錄』, 屈指存沒, 閱歲歷一甲, 就六十九人中死者又三十二人, 而登稀者只二人焉, 則壽命之艱, 世道之變, 果如何矣? 嗟乎! 更過數年, 餘存者年益大, 年益大則其存也幸. 其少者之皆得志於年與否, 且未可知. 況余之衰病支離, 朝夕待期, 其可冀延假時月, 再檢錄中存沒也耶? 陰陽遞禪, 風燭奄忽, 疾疫事故, 喪亡多門, 人生夢幻, 逝者如斯, 撫卷三歎而題之.”

22) 이민구는 ‘친구’로 여긴 인물들을 詩伴과 酒伴으로 구분하여 언급한 바 있다. 詩伴에 속한 인물로는 申翺聖(1588~1644), 朴灑(1592~1645), 李明漢(1595~1645), 李昭漢(1598~1645), 李植(1584~1647), 鄭弘漢(1582~1650) 6인이며, 酒伴으로는 許審(1585~1659), 卞三近(1579~1648), 李晉英(1580~1643), 韓會一(1580~1642), 韓亨吉(1582~1644), 金孝建(1584~1644), 李公益(1588~1649), 趙景禎(1579~1648) 8인이다. 李敏求, <不見【二首】>, 『鐵城錄三』, 『東州集』 詩集 卷3(문집총간 94). 부유섭, 앞의 논문, 367쪽 참조.

23) 유명석, 앞의 논문, 44쪽. 李明漢이 4월 16일에, 李明漢의 셋째 아들 李萬相(1622~1645)이 4월 21

년 사면을 받아 서울로 돌아온 이민구는 마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감우편」을 지은 지 10년이 지난 1656년 가을, 옛 명단을 펼쳐 놓고 다시 헤아려보니, 이제 생존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었다.²⁴⁾ 바꿔 말하면 이민구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했던 존재들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의 마지막까지 이민구와 함께 했던 인물이 정세규였다.

지난 갑인년(1614, 광해군6)에 나와 東里公[鄭世規]이 벗 韓泰而[韓亨吉]와 鄭德餘[鄭百昌, 1588~1635]와 安夢孚[安弘量, 1590~1616]를 데리고 伊川 임소로 가시는 형님 議政公[李聖求]을 전송하면서 靈谷書院에서 술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는 동리공의 枕流堂에 머물면서 서원의 匠役을 감독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을 타고 돌아갔다. 당시에 눈보라가 심하여 東里의 빈 집으로 가서 술을 찾아 추위를 달랬다. 동리의 부인이 계집종을 시켜 청소하게 한 다음 객을 맞이하고 맛난 술을 내놓으셨다. 또 이웃집의 노래하는 이를 불러 흥을 돋우셨다. 객이 이미 취하자 함께 聯句로 駢偶文을 지어 문에 두루 적었으니, 이제 4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직 나와 동리공만 다행히 살아남아 지난날 노닐던 때를 돌아보니, 한바탕 꿈처럼 생생하다. 비록 정사가 증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여러 벗들도 다 아득한 황천객이 되었으니, 글과 술을 질탕하게 즐기는 것을 또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대략 이제와 지난날의 일을 기록하여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감회를 부친다.²⁵⁾

일에, 李昭漢이 4월 23일에 죽었을 정도로 전염병의 위세가 대단했다.

- 24) 李敏求, 『東州集』 詩集 卷21, 「西湖錄十」, <後感友篇>, “往丙戌歲, 上距丁丑凡十年, 親故六十九人, 死者已三十二人, 於是作「感友篇」. 自丁亥至今丙申又十年, 存者只九人, 人之處此世, 奄忽淪喪, 其何如矣? 用前韻作「後感友篇」, 以寓余意云.”
- 25) 李敏求, 『東州集』 文集 卷3, 記, 「東里精舍記」, “往甲寅歲, 余與東里公携故友韓泰而·鄭德餘·安夢孚, 送伯氏議政公伊川任所, 會飲靈谷書院. 既而留東里公枕流堂, 董書院匠役, 餘人並騎而返. 時風雪甚,

정세규가 1661년에 죽었으므로 이 기문은 그가 죽은 해에 지은 글로 보인다. 47년 전 술자리를 함께 했던 형님과 벗들은 이미 다 죽었고, 팔순을 바라보는 정세규와 칠순을 넘긴 이민구 두 사람만 살아남은 것이다. 정세규는 1655년(효종 6)에 73세의 나이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직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구는 여전히 다시 출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1657년 5월에도, 1661년 1월에도 이민구를 서용하고자 하는 효종의 시도는 강렬한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²⁶⁾ 정세규가 1661년 6월에 돌아갔으므로, 오랜 벗 이민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목도했을 것이다. 이민구와 정세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친분을 맺어 왔다.

이에 대해 이민구의 형 이성구의 5대손인李克誠(1721~1779)은 두 가지 일화를 들었다.²⁷⁾ 정세규는 이조판서까지 올랐지만 문과 출신이 아니었다. 그가 젊은 시절에 科文을 지어 이민구에게 보이고 합격 여부를 물었다. 이민구가 문장은 좋지만 과거시험의 체제와 맞지 않다고 불합격을 암

就東里虛堂，討酒壓寒。東里夫人命女奴掃除迎客出嘉醞，且招隣家謳者以侑歡。客既醉，相與聯句作駢偶文，遍書戶闥，至今四十七年以久。唯余與東里公幸而獲全，回首曩遊，一夢依然。雖聞精舍重建，余既不能自力，而二三故人俱落落泉壤，文酒跌宕，又何可言也？略敘今昔，以寓存沒之感。”李敏求의 글 번역은 강원모·김문갑·오승준·정만호 역, 『동주집』,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함. 이하 마찬가지.

26) 李敏求, 『五月蒙復敘既逾月還收』, 『東州集』詩集 卷 22.

비와 이슬이 초목을 고루 적서 주는데	草木均霑雨露繁
마른 뿌리는 끝내 천지를 저버렸네	枯莖終自負乾坤
험한 세상 위태로워 외로운 울분 떨쳐내고	危塗震剝捐孤憤
말년에 온전하게 지내며 성인에 감격하네	末路周全感聖恩
삭아가지만 아직도 썩을 뼈 남았는데	銷去尙餘將朽骨
돌아왔어도 부르지 못한 혼이 있다네	歸來應有未招魂
조각배 타고 백사장 갈매기와 다정하게	扁舟獨與沙鷗狎
끝없는 맑은 파도에 실려 바다 어귀로 나간다	無限晴波近海門

1657년 5월에 서용되었다가 다음 달에 환수되자 쓴 시이다. 수련은 효종이 내린 서용의 명이 대간의 반대에 환수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함련은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효종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늙었지만 여전히 헌신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강호가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물이 바다에 다다라 되돌아오기 어려운 것처럼 출사의 기회를 잃었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27) 이극성 지음, 장유승·부유섭·백승호 옮김, 『형설기문』, 성균관대출판부, 2016.

시하자, 정세규는 두 번 다시 과거를 보지 않았다. 이 일화의 앞에는 매우 교만해서 결코 쉽게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정백창이 유일하게 자신의 ‘무릎’을 허여할 수 있는 인물로 정세규를 꼽았는데, 이민구가 뒷날 정세규를 정승으로 천거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민구는 정세규가 죽자 제문을 지어 추모했는데, 거기서도 그 추천을 언급했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민구와 마찬가지로 정세규에 대해서도 강한 ‘안티’가 존재했다.²⁸⁾

제가 처벌받은 지 이제 20년인데, 그동안 위축되고 두려운 가운데 대단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강화도의 일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없지만 당시 비변사에서 일을 담당했던 三公 이하의 신하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오직 저만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야흐로 모난 말을 갈아 만들어 법을 심하게 적용한 것이 뼈에까지 사무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함정에 밀어 넣으려고만 할 뿐 일찍이 일의 始末에 대해 차분하게 따져 보지 않습니다. 죄를 쌓아 罪案을 만드는 데 마음을 다할 뿐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니, 진실로 머리를 들고 입을 열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자 해도 세속 사람들이 믿지 않아 아무런 도움은 없고 다만 더욱 비방을 들을 뿐입니다.

이러므로 입과 귀를 닫고 묵묵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죽어서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또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군자가 공정하고 자세하게 듣고 살펴서 그 실제적 사실을 자세

28) 李縉, 『三官記』 권1, 26a~26b, “丙子間, 命卿宰, 別薦人才, 舉鄭世規, 多至五六, 世規時爲安城郡守, 特除忠淸監司. 是冬, 虜亂, 南漢圍危, 四方絕勤王之師, 世規獨率兵入援, 至險川大敗, 堊以身免. 然圍城中, 初聞援兵之至, 筵中至有殿下之臣, 惟鄭世規一人之語, 以是有寵世規, 又是南人上方爲扶抑之論, 擢授銓長. 趙公錫胤, 嘗言其不協人望, 至是爲吏曹參判, 恥居其下, 上疏力辭, 復申前說. 上怒其伐異, 竄江界, 尋有還.”

히 채택해 준다면 얹어진 동이의 아래라도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²⁹⁾

이민구가 강화도 함락에 대하여 입을 연 시점은 ‘비변사에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즉 당시 청나라의 침공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데 참여한 인물들이 모두 죽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인 정세규 역시 당시에는 충청도관찰사였으므로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논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정은 문서나 傳聞, 기억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證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구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선언이다.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657년 이민구의 서용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宋時烈(1607~1689)이었다. 그는 군대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강화도 함락 당시 領將 이상과 ‘남한산성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자’를 모두 죽여야 한다고 했다.³⁰⁾ 영장 이상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이민구가 유일하니, 결국 이민구는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1661년에 이민구의 서용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金萬基(1633~1687)였다.³¹⁾ 그는 강화도에서 순절한 金益兼(1615~1637)의 아들이었다.³²⁾ 뒷날 1670년 이민구가 죽자 예조는 전례에 따라 弔祭와 致博을 청했는데, 도승지 張善澂(1614~

29) 李敏求, 『答鄭判書書』, 『東州集』文集 卷1, “僕之得罪迨今二十年, 縮惡畏約, 危辱極矣. 江都之事, 非無一二可言. 而向時樞司在事之臣, 自三公以下徂謝已盡, 唯僕冥頑幸全. 世方磨厲角圭, 操切次骨, 專欲擠人坑窟, 未嘗徐究始末, 積罪成案, 極意而不恤, 苟欲仰首開喙, 自明其不然, 無益於俗不信, 祇益詬耳. 用是韜舌囚聲, 嚙嚙以待沒世, 死而無一人知己, 亦無悶焉. 雖然使君子公聽并察, 備探其款實, 則覆盆之下, 易可暴露.”

30) 『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8월 16일(병술).

31)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12월 15일(신유); 12월 19일(갑자).

32) 공교롭게도 金萬基의 동생인 遺腹子 金萬重은 이민구의 시를 두고 “동방의 시로서 독특한 시세계를 열었다[近代李子時其成家者, 蓋東詩橫出之枝也]”고 평가하였다. 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하), 문학동네, 2010, 461쪽.

1678)은 “중사의 죄인을 나라가 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집에서 편안하게 늙어 죽게했다”며 시행에 반대하였다.³³⁾ 장선징은 장유의 아들이자, 사형당한 장신의 조카였으며, 강화도에서 순절한 金尙容(1561~1637)의 외손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날 강화성 안에 있었다.³⁴⁾ 이민구는 당대의 이데올로그, 임금의 장인, 왕의 최측근 등에게 지속적으로 배척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西人이었다.

III. 권한과 책임, 김경징과 장신

1636년 12월 13일에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로 청나라의 침입이 조정에 알려졌다. 다음날 청군이 개성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인조는 예방승지 韓興一(1587~1651)에게 종묘 사직의 신주와 빈궁을 받들고 강화도로 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경징을 검찰사로, 이민구를 부검찰사로 삼아 빈궁의 행차를 陪行하여 호위하게 하였다.³⁵⁾

(14일) 未時에 대가가 승례문에 도착하였는데 오랑캐 군대가 西郊까지 압박해 왔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당황하여 대가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니 적들이 곧바로 포위하였습니다. 오직 강화도로 가는 길만 막히지 않았는데 바람과 파도가 바다에 일렁이고 얼음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16일에 이르러 빈궁께서 비로소 광성진을 통해 강화도에 들어오셨습니다

33) 『현종개수실록』 권22, 현종 11년 2월 19일(정축).

34) 尹宣擧, 『記江都事』, 『魯西遺稿』 卷15, “張次周·權順正·順昌·金益兼·金震標·姜文明·韓以明·張善徵等在城內. 徐元履·權順長·順悅·尹城·金佐明·沈熙世·申昇·崔後亮·李時中等在城外. 往來于分司之外, 探聞南漢消息.”

35)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12월 14일(갑신).

니다. 검찰사의 직분은 다만 도로와 배편 마련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미 강화도에 들어온 이상 저희들은 실상 필요 없는 관직이었습니다.³⁶⁾

이민구는 14일에서 16일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자신들은 종묘의 신주와 빈궁 일행들이 강화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강화도 상륙 이후의 일만 적고 있다. 사람들이 권한 밖의 일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하여 해명하겠다는 것인데, 김경정과 이민구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강화도 함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부터 큰 허물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묘사주와 여러 행차는 밤에 김포를 통과하여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강화도에 도달했다. 두 검찰 등은 먼저 자기 식솔들을 태워 보냈으나, 빈궁을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 이하는 배가 없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윤전과 송시영이 해안가에 놓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배를 타야겠소” 라고 하자, 이민구가 말하기를, “이 배에 태울 사람들은 바로 나의 식솔들이오. 내가 배를 구했으니 우리 식솔들이 건넌 이후에야 다 같이 건널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대개 검찰은 행차들을 호위하는 것이 임무일진댄 종묘사직의 신주, 빈궁 및 여러 호종신들이 거의 건넌 이후에야 자신의 식솔들을 건너게 해야 할 것인데도, 대소와 선후에 어긋나게 행동함은 말할 것도 없었으니 대체로 황급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재주와 식견이 따르지 못한 데서도 나온

36) 李敏求, 앞의 글, “木時, 大駕到崇禮門, 虜鋒迫西郊. 朝廷慌遽, 奉大駕轉入南漢山城, 賊即設長圍. 唯江都路通無阻, 風濤駕海, 冰澗山積. 至十六日, 嬪宮始由廣城津入江都. 檢察之職, 只管道路舟船供頓, 而既入島, 臣等實爲冗官.”

것이였다. 송시영이 나를 위해 분개하여 말했던 것이다.³⁷⁾

羅萬甲(1592~1642)의 『병자록』을 비롯하여 강화도의 일을 다룬 여러 기록들은 하나같이 묘사주와 빈궁 일행이 김포에서 강화도로 건너가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경징과 이민구가 자신의 식솔들과 재산을 건네주느라,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할 종묘의 신주와 왕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자빈 강씨가 김경징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질책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³⁸⁾ 덕분에 부검찰사 이민구는 검찰사 김경징의 큰 악명에 묻히는게 상례였다. 하지만 윤선거는 특별히 김경징보다는 이민구 비판에 치중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목도한 일은 아니었다.³⁹⁾ 제보자는 사복시주부 宋時榮(1588~1637)이였다. 사복시는 궁중의 말과 가마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었기에 배편에 간여하는 일은 당연했다. 강화도에서 김경징·이민구의 잘못된 처사에 맞섰던 김익겸·윤선거의 모습을 보고 송시영이 이민구가 入島 전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민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된 임무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한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구는 논점을 강화도 수비로 옮겨 놓았다.

37) 尹宣舉, 앞의 글, 廟社諸行, 則夜過金浦, 三日而乃達江都, 兩檢察等, 先載其家屬, 而官宮以下, 無舡不得渡, 弼善公與宋主簿指倚岸一舡曰: “吾輩可乘此舡矣.” 李敏求曰: “載此舡者, 乃吾家屬也. 吾當得舡, 可與道後同濟矣.” 蓋檢察以護行爲任, 則廟社·嬪宮及諸從臣汜濟而後, 可濟其家屬, 而大小先後, 錯行無倫. 蓋因倉卒未遑, 而亦出於才識之不逮也. 宋主簿爲余慨然言之矣. 번역은 신달도·정양·윤선거 원저, 신해진 편역,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역락, 2012, 126~127쪽.

38) 李肯翊 <江都留沒>, 『仁祖朝故事本末』, 『燃藜室記述』 권26, “慶徵聚船隻, 先濟其家屬及所切親友, 而不令竝濟他人, 故士族男女, 橫亘數十里, 甚至嬪宮一行, 到津頭無船不得渡, 寒餒二晝夜, 嬪宮於轎內, 親自疾呼曰: ‘金慶徵, 金慶徵, 汝忍爲此耶?’ 張紳聞之, 言於慶徵, 始令先濟, 而士女之遍岸籠野者, 攀號求救, 賊騎奄及, 一瞥之頃, 踣踏殆盡, 或被搶掠, 或投海水, 如風揚葉, 慘不忍言.”

39) 윤선거는 한양 사람들이 도강하던 곳보다 남쪽인 광성진으로 들어왔던 터였다. 尹宣舉, 앞의 글, “余從伯氏奉慈行十七日, 由廣成津渡, 入于佛原.”

40) 송시영과 함께 이민구가 대립했던 尹焄은 윤선거의 작은아버지였다. 다만 제보자 송시영은 강화도 함락 당시 자결로 순절했다.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22일.

며칠 뒤에 무인 崔尙元이 남한산성으로부터 蠟書를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有旨에 이르기를 “水陸의 방비를 모두 유수 장신에게 위임하니 간섭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승려가 또 남한산성으로부터 왔는데 유지의 내용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대개 行朝에서 밖의 포위망이 단단하므로 최상원이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앞의 유지를 다시 내린 것이었습니다.⁴¹⁾

이민구는 崔尙元이 ‘강화도 수비의 책임자는 장신’이고 그의 임무에 ‘간섭하지 말라’는 왕명을 담은 ‘蠟書’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다. 이는 강도 실패의 죄를 이민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므로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 ‘최상원’이라는 전달자와 ‘납서’라는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납서를 살펴보면, 인조는 강화도행이 좌절되어 결국 남한산성에서 농성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성밖으로 명령을 보낼 때마다 납서를 활용하였다. 최초의 기록은 12월 17일에 제도에 근왕을 명령했던 때였다.⁴²⁾ 두 번째 납서는 19일 강화도의 장신·김경징·이민구에게 한 諭示였다. 실록에 있는 유시의 내용⁴³⁾은 이민구가 전한 내용과 다르다. 도원수 [김자점]와 부원수[신경진], 그리고 팔도의 감사·병사에게 근왕을 재촉하라는 명령과 강화도 수비를 엄히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문제는 유시 속의 ‘檢飭’이라는 단어인데, 檢飭의 대상은 ‘本府防備’이다. 그렇다면 인조의 유시는 장신에게는 ‘防備’를, 김경징과 이민구에게는 이를 ‘檢察’하는 임무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1) 李敏求, 앞의 글, “居數日, 武人崔尙元自山城齎到蠟書. 有旨曰: ‘水陸防備, 專委留守張紳, 俾無掣肘之患.’ 問兩日, 不記名僧人又自山城來到, 有旨同前. 蓋行朝慮外圍嚴密, 尙元不得達, 更申前旨云.”

42) 『인조실록』 인조14년 12월 16일.

43) 『인조실록』 인조14년 12월 19일. “賊兵圍逼南漢, 今已六日. 君臣上下, 寄在孤城, 危若一髮, 而外援不至, 通諭路絕. 卿等以此意, 傳諭于都·副元帥及諸道監·兵使, 使之星夜來援, 以救君父之急. 且本府防備, 亦宜檢飭, 津頭渡涉, 嚴加譏禁, 俾無一分疎虞之患. 募得死士, 期於回報.”

그리고 납서를 전한 ‘최상원’이라는 이름은 남한산성에 있던 나만갑이나 남급이 남긴 기록⁴⁴⁾에는 보이지 않는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1631년 기사에 단편적인 언급만 보일 뿐이다. 오로지 그는 이민구와 함께 강화도에서 탈출하는데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구는 같은 메시지를 가진 승려가 또 도착했다고 하고 있다. 이름 모를 승려를 또 보냈다는 것인데, 그렇게 힘들게 보낸 메시지는 강화도 수비를 장신에게 전달시켰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였다. 결국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변론이다.

저희들은 애초에 강화도를 방어할 책임이 없었고, 조정의 뜻도 이와 같았으니 강화도의 機務에 대해서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김정경과 장신이 많은 말로 옥신각신 다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어찌 문득 패망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장신 또한 적을 바라만 보다가 일을 그르쳐 나라가 잘못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뜻을 따라 군사를 징발하는 데 신중하였으니, 오랑캐들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간혹 장교들이 와서 적들의 실상을 보고하고 동료들이 더욱 삼엄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권하는 말을 했지만, 문득 지나친 걱정이며 쓸데 없이 겁을 내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그의 지기가 대단히 사나워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니, 이것도 천운입니다.⁴⁵⁾

44) 南汲 『南漢日記』(남급 저, 신해진 역, 『남한일기』, 보고사, 2012)

45) 李敏求, 앞의 글, “臣等始無守禦責, 朝旨又如此, 江都機務, 所非敢與知, 而金·張之頑硬煩言, 非意所及. 然其一時言事參差, 豈遽爲覆敗之所由哉? 張紳亦非欲玩寇愆事, 致誤家國, 但以過備物情, 重於調撥, 謂虜不能飛渡. 間有軍校之來告賊情·同列之勸加嚴備, 輒以爲過慮虛怯, 志氣伉厲, 未肯措意, 斯亦天也.”

종전 후 김경정은 사사되었고, 장신은 자진형을 받았다. 둘은 각기 검찰사와 강화유수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지만, 또한 반정 1등 공신의 아들과 반정 3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민구는 두 사람의 불화가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강화도 수비를 책임지는 수뇌부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런 다툼을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음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같은 검찰 업무인 김경정에게 책임을 많이 지울 수는 없었다. 장신이 낙관적인 전망의 중론에 기대어 실무 장교들의 사전 예방 조치 건의를 묵살했음을 강조했다. 결국 강도 실패의 근본 책임은 장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IV. ‘死則生’의 자세와 奇緣, 봉림대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는 소현세자빈 강씨만 있던 게 아니라 봉림대군도 있었다. 전시에 왕권을 위임받지 못한 왕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민구의 보고에 따르면 봉림대군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장신과 김경정의 대립 국면에 봉림대군이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기록에서는 의도적으로 봉림대군의 존재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구는 봉림대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월 21일에 이르러 오랑캐들이 물으로부터 배를 끌고 강화도 동쪽 해안에 도착하니 온 섬 안에 사람의 기색이 다 사라졌습니다. 장신이 광성진에 있었기에 수군과 육군을 다 모았으므로 강화부에는 한 명의 군사도 없었습니다. 수상께서 당시 鳳林大君이셨는데 外司에 나와 여러 재신

들에게 이르시기를 “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가서 賊情을 살펴보라.” 라고 하셨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으니 제가 속으로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다만 수하에 병사가 없으니 적의 실태를 살필 수는 있겠으나 적을 막는 일은 어찌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大君[上]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가서 살펴보고 보고하라. 내가 마땅히 병사들을 모아 뒤따라 달려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 하직 인사를 하고 가는 길에 임시 거처를 지나게 되었지만 들어가지 않은 채 갑곳 都廳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시각이 2경에 가까웠고 칙흑처럼 어두웠는데 적진의 불빛이 물 너머에서 깜빡이는 것을 보고는 작은 종이에 제가 본 것을 직접 써서 보고하였습니다.⁴⁶⁾

강화도 수비책임자인 장신이 활용 가능한 육군과 수군 병력을 모두 거 뒤들여 광성진에 주둔하면서, 강화도의 긴 해안선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부족했다. 당시 날씨와 조류 상황을 고려하면 광성진 지역이 적군의 도해 예상 지점이었지만⁴⁷⁾, 조선군의 예측과 달리 청군은 월곶의 대안에서 작전을 펼쳤다. 때문에 정규군과 함께 있지 않던 봉림대군과 재신들에게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봉림대군은 외사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적정 탐지 등 수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민구는 유일하게 자신만이 왕자의 명령에 적극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46) 李敏求, 앞의 글, “及正月二十一日, 虜從陸曳船, 奄至東岸, 閩島無人色. 張紳方在廣城津, 悉集水陸軍丁, 府中無一兵. 今上時爲鳳林大君, 出御外司, 普謂諸宰: ‘公等一人先往規賊’ 左右嘿不應. 僕私心鄙之, 對曰: ‘下官請先出. 但手下無見兵, 胡賊則可, 禦敵奈何?’ 上曰: ‘我非謂公擊賊, 第往規報. 我當收募追赴.’ 臣卽起辭, 過寓舍不入, 馳詣甲申都廳. 時近二鼓, 陰晦如漆, 望見賊火隔水明滅, 用小紙手書目見以報.”

47)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183쪽.

병사도 없이, 가족들이 있는 임시 거처에도 들르지 않고, 한밤중에 최전선인 갑곶으로 지체없이 나아가 척후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민구는 ‘금상이 그 때는 봉림대군’이라고 밝혔고, ‘(鳳林)大君’이라고 적어야 할 자리에 ‘上’이라고 적은 것은 효종이 아직 재위(1649~1659)에 있기 때문이었다.

동이 틀 무렵에 살펴보니 적들의 털 장막 대여섯 줄이 문수산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사시 쫓 되었을 때 적들이 대포를 이용해 서쪽 해안을 연이어 폭격하니 흠과 돌이 부서졌습니다. 작은 배 수십 척이 앞 바다에 떠서 장차 건너오려는 형세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군께서 도착하셨고, 재상 김상응과 판서 李尙吉과 판서 趙翼과 동지 呂爾徵과 참의 俞省曾과 헌납 李一相과 전적 李行進 등 10여 명도 이어서 도착하였습니다. 충청도의 전선 7척은 급류에 정박해서 갑자기 제어할 수 없었고, 본부의 수군 27척은 광성진에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조수가 밀려나가자 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본부의 중군 黃善身이 광성진에서 비로소 육군 113명을 이끌고 와서 개펄에서 저지하며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막 봉우리의 정상에 올라서서 미처 진을 펼치지 못했는데 적선이 이미 중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군께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공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군사들을 더 모아서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또 저를 돌아보고 거듭 신신당부하고는 말을 달려 부중으로 돌아가셨고, 여러 재신들도 따라 흠어졌습니다. 뒤에 들으니 대군께서 부중에 도착하여 갑옷을 걸치고 군사를 모으다가 남문에 도착하여 적을 만나게 되자 그치셨다고 하였습니다.⁴⁸⁾

48) 李敏求, 앞의 글, “黎明, 靛幕五六列在文殊山下, 處處煙起. 日向巳, 賊用大砲, 連擊西岸, 土石糜碎.

새벽이 되어 시야가 확보되자 월곶의 대안에 구축된 적군 진지가 목격되었다. 바다를 건너온 포탄은 강화도 해안을 때려 댔고, 그 아래로 수십 척의 적선이 도해를 시도하고 있었다. 충청수사 강진혼의 선단은 남하하다 조류에 휘말렸고, 장신이 지휘하는 광성진의 강화 수군 선단은 조류에 밀려 북상하지 못했다. 적군의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겨우 중군 황선신이 이끄는 백여 명이 도착했으나 절망적이었다. 봉림대군은 이민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군사들을 모아 온다면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김상용과 이상길, 조익과 여이징 등도 대군이 사라지자 흩어져 버렸다. 이민구가 봉림대군을 수행한 재신들의 이름을 구체적인 명단으로 작성한 이유는 자명하다. 김상용 등이 나중에 순절했다 하지만, 나머지 신료들도 애초에 수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대군만 유일하게 싸울 각오로 갑옷을 갖추어 입고 출전하려 했으나, 그 사이에 도해에 성공하여 강화부로 물려간 청군을 남문에서 맞닥뜨리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봉림대군이 신속하게 준비를 끝내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혐의를 피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강화부 안에 있던 사람들, 뒷날 피해자로 자처하던 사람들 역시 강화 수비에 미온적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처럼 이민구는 강화도 실패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저는 그대로 갑곶 도청의 북쪽 언덕에 있었는데 적들이 배를 댄 곳과

小舟數十浮泛前洋，有將濟之形。俄而上至，金相尙容·李判書尙吉·趙判書翼·呂同知爾微·俞參議省曾·李獻納一相·李典籍行進等十餘人續至。忠清道戰船七隻碇急流，猝不可制。本府舟師二十七艘從廣城北上，潮退閣不進。於是本府中軍黃善身，自廣城始碇陸軍一百十三名，以阻浦激，迂轉而來。甫上峯巖，未及布陣，賊船已過中流。上謂曰：‘公留此，我益募兵以來。’行且顧臣，申教丁寧，跋馬還府，諸宰隨散。後聞上至府中，披甲募兵，至南門遇賊而止云。”

는 겨우 4, 5십 보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적들은 재빠르게 본부의 군사를 무찌르려고 곧장 진격하여 성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갑옷을 걷어붙이고 재빨리 달려 곧장 황선신의 군대와 마주쳤는데 황선신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저의 수하에 다소의 군사가 있었다면 적들이 반드시 먼저 섬멸했지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언덕 위는 텅 비어 적들이 없었습니다. 멀리 성 밖을 바라보니 적들의 기마병이 내달리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偏裨 이하 여섯 사람과 서둘러 부내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대세는 결판나고 흐르는 피가 도랑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삼면이 물로 막혀 있어서 다시 발길을 옮길 곳도 없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날카로운 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으니 투신자살하여 오직 한 번 죽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보니 그 지역은 제가 지킬 책임이 없었고, 군사는 제가 지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 거듭 中旨를 받아 수륙의 방비를 守臣 장신에게 맡겼으니 저에게는 죽을 책임이 없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적들 속에 홀로서 있다가는 조만간 칼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49)

도해에 성공한 청군은 매섭게 달려들었다. 『병자록』에서는 김경징이 이끄는 강화 수비군이 사격으로 적을 저지하다 탄약이 떨어져 속절없이 패배하는 것⁵⁰⁾으로 그려진 데 반해, 이민구는 적군이 단병접전으로 순식간

49) 李敏求, 앞의 글, “僕仍在都廳北阜, 去賊卸船處壘四五十步。賊急欲破本府兵, 徑進薄城, 褰甲疾趨, 直觸善身軍, 善身軍潰。如使僕手下有多少軍兵, 則賊必先加廝殺, 不應過去不顧也。須臾岸上空無賊, 遙見城外, 賊騎馳驟, 擄殺人物。僕只與偏裨以下六人倉卒欲還府內, 則大勢橫截, 流血成渠。所處三面阻水, 更無移足地, 碧海在眼, 利劍在腰, 投淵刃決, 唯一死。既自念土非守也, 兵非主也, 且再蒙中旨, 水陸防備, 屬之守臣, 在我無死責。顧以獨立賊藪, 受刃特片刻早晚耳。”

50) 김경징은 도체찰사인 아버지가 마련한 전쟁 물자를 함부로 낭비할 수 없으며, 탄약을 매우 적게 나눠 주었다.

에 황선신의 수비군을 돌파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도 그 곁에 있었지만, 휘하에 병력이 없어 적군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일본일초라도 적군을 저지할 의지가 있었다면, 강화성으로 쇄도하는 적군을 돌려 세우기 위한 행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민구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 해안가에 은폐·엄폐하면서 적군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는 서술이다. 상륙에 성공한 청군 역시 후속부대를 기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강화성 내의 지휘부를 접수해야 했다. 따라서 찬찬히 수색하면서 진군하지 않았고, 이민구와 그의 수행원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적군이 무시하고 지나칠 정도로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군의 전격적인 이동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공포와 피해를 강조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도해하는 청군의 배가 작았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구는 청의 기병부대까지 목격했다고 하고 있다.⁵¹⁾

적군이 휘몰아친 뒤 살아남은 이민구와 여섯 명의 수행원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대세가 결판났기 때문이었다. 삼면이 바다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민구는 투신 자살을 생각하지만, 강도 함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가 반문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강화부에 진출한 청군이 뒤돌아보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적군의 투입을 허용한 순간, 금성탄지였던 강화도는 퇴로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 때 이민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51) 구범진은 청군이 자신들의 장기인 기병을 강화도에 투입하지 못했으며, 이민구의 ‘敵騎’ 발언을 사실과 거리를 둔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구범진, 앞의 논문, 2017(a), 339쪽). 하지만 가족과 함께 밀물이 들어와 배를 띄우기만 기다리다 청군에게 화를 당한 鄭濼도 적의 기마부대[賊數十騎]가 공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鄭濼,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정환국, 앞의 논문, 121~123쪽 참조. 구범진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민구의 편지가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한 것이다.

정오를 지날 무렵 문득 보니 방석만 한 작은 배가 府의 남쪽 古東浦 쪽에 서 내려오는데 한 아이가 노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타고 海船에 도달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위에 있으니 이것은 감히 거짓말이 아닙니다.⁵²⁾

정오를 지날 무렵, 얼핏 보니 방석만 한 작은 배가 府의 남쪽 고속포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한 아이가 노를 잡고 있었는데, 나이는 17, 8세 정도이고 용모는 조심스럽고 순박해 보였으며, 배 안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었다. 종자가 배를 부르자, 배를 저어 해안에 대주었으므로, 드디어 배에 올라 해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급한 나머지 노를 잡았던 아이가 누구인지 물을 겨를조차 없었다. 잠시 후 바다를 두루두루 둘러 보았으나 오가는 작은 배가 하나도 없었으니, 끝내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⁵³⁾

이름모를 소년이 모는 방석만한 작은 배가 나타났고, 이민구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장신이 이끄는 강화 수군의 함선으로 옮겨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민구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포구주자전>을 지은 바가 있기에, 편지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다만 이런 구출 혹은 탈출 과정이 이민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다.

「포구주자전」은 이민구가 정해년에 작성한 글로 자신이 강화부로 복귀하지 못하게 된 상황과 장신의 함대에 구조되어 살아난 일이 우연 혹은

52) 李敏求, 앞의 글, “日過午, 忽見小舟如席大, 自府南古東浦繚轉而下, 一童持楫, 得寄載以達海船, 萬死間關, 苟保至今. 天日在上, 非敢讐言.”

53) 李敏求, 「浦口舟子傳」, “日過午, 忽見片舸如席大, 自府南古東浦繚轉而下, 獨一童持楫, 年可十七八, 容貌謹樸, 舟中更無餘物. 從者呼喚, 乃刺船傍崖, 遂援而上, 得達海舟. 屬忙遽, 未暇問持楫者爲誰, 既而環視洋中, 絕無小舟往來, 竟莫知其所之.”

친운이었음을 강조했다.⁵⁴⁾ 정해년인 1647년(인조 25) 4월 13일 이민구는 유배가 풀리고 사면을 받았다.⁵⁵⁾ 그러나 같은 달 26일 사헌부에서는 이민구의 위리안치가 사형을 감형한 것이므로 내지[아산]로 옮겨진 것도 특혜인데 어찌 완전히 풀어 주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겠냐며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이민구가 중죄인인 것은 맞지만 정배형을 오래 받았으니 석방하는데 문제 없다고 응수했다. 사헌부의 간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한 달 동안이나 이 일을 논하였으나, 인조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⁵⁶⁾ 이런 상황에서 이민구는 「포구주자전」을 지어 자신의 생존을 남득시키려 했던 것이다. 죽으려 했지만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변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이민구는 ‘하늘의 해’에 맹세하여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아아, 처음 명령을 받고 성을 나가 적정을 살필 때까지의 정황, 적들이 다가왔지만 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정, 성이 함락되었지만 목숨을 건져 바다로 빠져나온 일이 모두 이처럼 顛末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땅에 두려고 하여 장수가 되어 일을 그르친 법률로 다스리니, 그 하나는 호서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府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전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희생되어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치자식을 탈출시키려고 피하였다고까지 하니 죄를 더하고자 하여 오히려 더 다른 말이 없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⁵⁷⁾

54) 「浦口舟子傳」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일환, 앞의 논문, 119~123쪽 참조.

55) 『인조실록』 인조 24년 4월 13일.

56) 『인조실록』 인조 25년 4월 26일.

57) 李敏求, 『答鄭判書書』, 『東州集』文集 卷1, “嗟乎!自始受命以至出城胡賊,賊薄而不得還城,城陷而脫命下海,俱有本末如此.而今之言者,必欲不置之地上,繩之以爲將失誤之律,一則曰不往湖西,一則曰不還府中.一家百口併糶於烽焰,尺口無遺,而至曰圖出妻子,欲加之罪,猶患無辭.”

그날의 행적을 자세하게 밝힌 그는 본격적인 해명에 나선다. 자신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을 호서로 가려하지 않은 것과 강화 부중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했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뒤의 문제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민구는 자신이 부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봉림대군, 즉 금상의 명을 받아 제자리를 지킨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청군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死守할 수 없었고, 이미 부중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죽을 곳에서 살 길이 열렸기에 수군의 배에 구조될 수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독자들의 수궁 여부와 관계없이 부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해명을 위해 끌어들인 것이 ‘처자식을 탈출시켜려고 피했다’는 비난이다. 이민구는 강화도에서 모든 가족을 잃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순절했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명문가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⁵⁸⁾

전란이 발생한 처음에 大駕가 갑자기 출발하여 강화도로 가려다가 행렬이 성문에 이르자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처음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출발하기에 앞서 한 시각 먼저 별도로 방어할 장수를 보내 큰일을 맡겼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강화도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이어서 中旨를 내려 보내 강화 유수에 중대한 일을 맡겼으니 검찰사의 관직은 그 책임이 저절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방어에 실패한 뒤에 비로소 죄를 나누어 처벌하면서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을 죽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등하게 처벌하려고 하

58) 이민구의 부인과 두 며느리는 포로로 잡혔는데, 아내는 평안도 가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윤리적으로 호되게 비판하였다. 羅萬甲, 『記江都事』(신달도·정양·윤선거 원저, 신해진 편역,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역락, 2012, 168~169쪽). 정환국, 앞의 논문, 116쪽 참조.

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⁵⁹⁾

이민구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인조가 몽진을 나선 그날, 애초 계획대로 대가가 강화도로 갔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돌발 상황이 발발하면서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왜 장수를 파견하지 않았는가 묻는다. 별도의 방어책임자[守禦之將]를 선정하여 파견했다면, 권한을 두고 다투는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힐난이다. 물론 留都大將으로 임명된 沈器遠(?~1644)이 한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민구의 이런 주장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다음은 남한산성에서 ‘머뭇’을 내려 장신에게 ‘수비’의 임무를 고지했는데, 왜 ‘검찰’의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를 추궁하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金의 海陵王 完顏亮(1122~1161)의 瓜洲 공격을 저지한 南宋의 참모 虞允文(1110~1174)의 예를 들어, 실제 병력의 지휘 권한과 패전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윤문은 文官에 참모였지만 지휘권이 있었기에 采石 지역의 험준한 지형을 잘 활용하여 金의 군대를 패퇴시킬 수 있었는데, 만약 그에게 군사지휘권이 없어 천혜의 지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병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겠냐는 항변이었다.⁶⁰⁾

일을 논하는 사람들이 다만 제앙을 만들 생각만 하고 의문을 조정하지도 않아 아침에 보태고 저녁에 더하니 10년 20년에 이르도록 비방이

59) 李敏求, 앞의 글, “變初大駕卒起幸江都, 行至城門, 則轉入南漢, 非由始計. 先大駕一時刻別遣守禦之將, 付以大事, 必無是也. 入島之始, 續發中旨, 委重守臣, 檢察之官, 爲任自別. 而覆敗之後, 始乃分罪, 所欲陷者與死比其若是耶?”

60) 李敏求, 앞의 글, “假令, 虞允文無葉義問幕府事權, 無李顯忠山後旗鼓, 而采石失險, 逆亮徑渡, 則其可令允文當興尸之責哉?”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견책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을 망치고 나라를 저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봉당의 사람들이 사사롭게 사귀어 정의가 친밀한 이들은 근거 없는 말과 꾸며낸 말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구제해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 명부에서 이름을 씻어 내고 宦路에 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홀로 저에게만은 많은 사람들이 노여워하고 원망하여 반드시 죽을 땅에 밀어 넣고 큰 죄를 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시켰습니다. 전후의 두 임금께서 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어 법을 너그럽게 적용해 주신 덕분에 거듭 위태로운 목숨을 이어오고 있으니 진실로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⁶¹⁾

이민구는 자신에 대한 불합리한 추궁과 지속적인 적대는 당쟁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대감 때문에 의혹을 덧붙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급기야는 당시 자신만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사람은 인조와 효종, 두 임금이라고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효종-현종에 이르기까지 3대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이민구를 서용하고자 하였다. 임금 개인이나 관료들 가운데 이민구의 재주와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정명수의 처제를 첩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최고 권력층을 압박하여 복귀하려했던 이민구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

61) 李敏求, 앞의 글, “論事者徒思媒孽, 不經停疑, 朝增暮添, 至于十年二十年而謗益甚. 同時蒙譴之人, 壞事負國不止一二, 而朋黨私交, 情親意密, 遊辭飾說, 營揀百端, 因得以洗丹青而升青雲者比比. 獨於下流, 衆怒叢怨, 擠之於必死之地, 擬之以大何之律, 所賴前後二聖仁恩宏覆, 寬其網目, 再續危喘, 良非無狀所可僥冀.”

도 잊어서는 곤란한다. 이민구가 영변에서 아산으로 移配된 이유는 청나라의 사면령을 빌미로 西路에 위리안치된 죄인까지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정명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인조는 정명수의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⁶²⁾ 이민구가 봉림대군의 처사에 대해서도 당당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민구가 봉림대군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어도 그의 눈 밖에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강화도 실함에 있어 봉림대군의 책임도 적지 않았는데 이민구가 이를 함구했고, 이를 빌미로 효종에게 무언의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부정적 의심도 자아난다.

V. 김상헌이라는 권위를 넘어서기

이민구가 「포구주자전」에 이어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 강화도에서의 자세한 내막을 밝힌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당대의 公議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편지의 후반부에서 이민구는 김상헌이 김상용의 묘도문자에 적은 내용⁶³⁾, 즉 ‘호서로 가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해명한다. 이민구에게 주어진 호서에서의 임무는 ‘충청도관찰사’였다. 바로 정세규의 후임이었다. 험천 전투에서 정세규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린 조치였다. 이민구가 편지의 수신인을 정세규로 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민구는 정세규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받은 편지를 갈무리하여 정세규의 집으로 보내려 했다고 하였다.⁶⁴⁾ 遺筆을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친밀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후,

62) 『인조실록』 인조 21년 10월 9일; 10월 10일.

63) 李敏求, 앞의 글, “至於淸陰公文集內一款汚穢之言, 尤不知何所據而有此虛誣。”

이민구는 당시 현장으로 정세규를 인도한다.

그 다음 날 제가 밖에서 돌아오니 재상 尹昉과 김상용이 방 안에 있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김경징이 먼저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상 윤방이 말하기를 “호서 방백의 생사를 알 수 없소. 호서에 主將이 없고 남한산성의 명령이 통하지 않으니 공이 가서 그 임무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재상 김상용이 처음 그런 의사를 말했고, 윤방이 저에게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장신에게 이 르기를 “내가 지금 바다로 나갈 것이니 배와 식량과 노꾼을 공이 곧바로 준비해서 보내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 동쪽에 있는 재상 김상용이 묵고 있는 집에 가서 하직 하였는데, 공의 아들 춘천부사 金光煥이 아버지를 뵈러 왔기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났습니다. 제 우사에 들러 행장을 꾸리는데 피란한 유생 김익겸과 尹宣擧가 와서 보고 헤어졌습니다. 선원리에 있는 촌사로 나와 자고서 배를 준비하고 식량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상 윤방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해 오기를 “듣자니 호서 방백이 다행히 무사하다고 하니 공은 갈 필요가 없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성으로 돌아와 비로소 재상 김상용이 김경징과 주고받은 말이 있음을 들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을 뿐입니다.⁶⁵⁾

64) 李敏求, 앞의 글, “時有訶報者來傳湖西軍入撥山城, 爲虜所襲, 方伯墜崖不幸. 僕南望灑涕, 取足下在本道抵僕書, 手自實封, 欲待事定傳付公家. 爾時心事, 胡可盡言?”

65) 李敏求, 앞의 글, “其明日僕自外至, 尹·金兩相在房中召僕. 入則慶徵先在座, 不知所言爲何. 尹相曰: ‘湖西方伯存沒不可知, 本路無主將, 山城號令不通, 公便宜往察其任.’ 蓋金相首發其議, 而尹相以喻僕. 僕曰: ‘謹諾.’ 顧謂張紳: ‘吾今下海, 舟船糗糧棹卒, 公即調送.’”

이민구는 자신의 호서행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총 7명을 동원하고 있다. 원임대신 김상용과 윤방, 이제는 상관처럼 묘사하고 있는 김경정 등 이렇게 세 사람의 논의에 자신은 참여하지 못했음을 우선 제시하였다. 자신은 그들이 결정한 지시에 바로 수긍했고, 곤장 강화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장신에게 임지로 갈 수 있는 이동 수단과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들 네 명 모두 망자들이다. 윤방은 廟社主를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서인 핵심이었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다. 앞에서 이민구가 언급한 ‘죄인명부에서 빠진 사람’이라 하였다. 그런 인사에게도 자신은 깍듯하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정세규가 살아있다고 하며 발령을 거두어들인 것도 윤방이었다.

김상용과 함께 자폭한 김익겸과 달리 김광환과 윤선거는 증인이었다. 당일 김상용에게 하직하러 갔음은 김상용의 아들 김광환에게, 부임을 위해 행장을 꾸리고 있었음은 윤선거에게 증언을 받고자 하였다. 윤선거만큼이나 김광환이 중요한데, 이민구의 잘못을 공론으로 확정짓고 있는 것이 김상헌이 편찬한 김상용의 묘도문자이기 때문이다.⁶⁶⁾ 김상용의 신도비명과 행장에 각각 “눈물을 흘리며 가려 하지 않았다”거나 “갈 생각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⁶⁷⁾ 김상용의 순절은 인조의 의심으로 공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반작용으로 김상용의 강화도 행적은 일말의 주저함이나 명확하지 못한 처사가 보이지 않게 구성되어야 했다.⁶⁸⁾ 원임대신으로서 그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명문가 출신의 시임 관리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문의 권세를 배경으로 교만에 찌

66) 李敏求, 앞의 글, “今者金相行狀·碑文有曰: ‘涕泣不肯行.’ 曰: ‘無行意, 無可奈何.’”

67) 金尙憲, 『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神道碑銘 并序』, 『淸陰集』 卷26, “公奮謂行在受圍日久……江都檢察一人足了, 副使宜往湖西, 收散卒糾義旅, 督湖南兵在後者, 以赴君父之急, 機不可緩, 敏求涕泣不行.”; 金尙憲, 『伯氏右議政仙源先生行狀』, 『淸陰集』 卷37, “敏求殊無意行, 至涕泣危懼.” 『국역 동주집』에서 재인용.

68) 金일환, 앞의 논문, 97~103쪽 참조.

든 젊은이들은 김경장·이민구·장신이였다. 김상헌은 藩獄 등 청나라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淸議를 대표하고 있었기에 이민구는 그를 전면 부정하기 힘들었다. 김상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평판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김상헌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강화도에 있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다.⁶⁹⁾ 악의적으로 작성된 근거없는 말들을 인용하면서 생긴 문제였다고 했다. 그렇게 잘못 작성된 글이 김상헌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⁷⁰⁾ 하지만 이민구는 불안했다. 그래서 증인을 내세웠다. 김광환은 김상헌의 아들이자, 김상헌의 조카였다. 그의 증언이라면, 김상헌의 권위를 상쇄할 수 있었다. 윤선거는 강화도에서 김익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신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송시열에 맞설 수 있는 카드였다.⁷¹⁾ 당시 병 들어서 재상들에게 보고하고 여러 날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청군의 침입이 미미했던 호서 지역으로 나가는 게 좋을 뿐 했다는 말로 ‘주저하고 미적거렸던 상황’을 농치고 있다. 못 믿겠으면 생존한 증인에게 물어보라면서.⁷²⁾

이민구는 호서로 가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해소시키면서 편지를 끝맺는다. 그는 정세규에게 묻는다. 평생 동안 교류하면서 강화도에서 일에 대하여 자신이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죽음을

69) 李敏求, 앞의 글, “然淸陰公自正直, 必欲言事審慎, 當非有意於愛憎而故爲之說, 以示今與後也. 以事非目見, 言由衆聞, 取其無證之辭, 加諸衆棄之人, 而無所顧藉, 無所反復, 乃至是耳. 惜乎!”

70) 李敏求, 앞의 글, “以淸陰公之賢, 而不取重於論人; 以淸陰公之文, 而不見信於立言也. 群言過於三虎, 不可以破; 新書懸於百金, 不可以刊. 於斯時也, 乃欲喚人而立證, 鳴鼓而訟冤, 僕必知其不能也.”

71) 실제로 윤선거와 나만갑이 이민구의 호서행에 대하여 쓴 내용을 비교해보면, 나만갑은 김상헌보다 더 신랄하게 이민구를 비판하고 있다. 윤선거는 이민구가 김경장을 내세워 가지 않으려 했지만, 원입대신이 허락하지 않자 실제로 부임할 준비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달도·정양·윤선거 원저, 신해진 편역, 앞의 책, 134쪽; 161쪽 참조.

72) 李敏求, 앞의 글, “方其時, 行朝阻絕江都, 論議紛紜, 上下睽睽. 僕逼側牽掣, 嚶嚶無所獻爲, 告病相位, 退伏累日. 如得拔足離島, 誠爲得便. 況聞湖西直路數邑被搶之外, 舉皆乾淨, 守島出陸, 利害相百, 安有涕泣不肯行之理哉? 今金光煥·尹宣舉尙存, 其行不行, 覆實可知.”

앞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억울한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그 대상이 ‘知己’인 당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³⁾ 그렇다. 정세규에게는 처음으로 속내를 보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포구주자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지속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편지는 여기서 종결되지 않는다. 그는 협주를 통해 한 가지 더 해명한다.

처음 강화도에 들어갈 때 빈궁 일행은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海船]를 탔는데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는 느리기 때문에 얼음덩이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김경징은 강에서 운행하는 배[江船]를 탔는데 강에서 운행하는 배는 빨라서 얼음을 타고 넘어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날 빈궁 일행이 탄 배가 비로소 덕포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승지 한홍일과 더불어 빈궁 일행의 배를 따라 건넜습니다. 가을에 이르러 김경징이 金時讓의 말로 인해 빈궁 일행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강화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죄를 받았으니 推案에 그러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가 함락된 일로 처벌되었다고 말하여 분별하는 자가 없으니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⁷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협주는 ‘수미쌍관’을 이루고 있다. 이민구가 협주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바는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김경징은 애초 묘사주와 빈궁을 강화도로 모시는 임무를 다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배를 나눠 탈 때에 김경징은 속도가 빠른 江船을 선택했는데, 실상 그 선택의 기

73) 李敏求, 앞의 글, “與足下談道平生屢矣, 亦聞僕一言半辭及此者乎? 昔者不言而今者言之, 死期迫矣, 餘日索矣. 畏首畏尾, 身其餘幾? 不一爲知己小泄其衷曲, 則誠意無窮, 沒有遺恨, 既自知話愈甚而終不能已, 又一罪也. 敏求頓首.”

74) 李敏求, 앞의 글, 【初入江都, 內行乘海船, 海船遲, 爲冰澌所阻. 金慶徵乘江船, 江船疾, 凌冰先濟. 其翌日, 內船始達德浦. 敏求與承旨韓興一尾內船以渡. 至秋, 慶徵因金時讓言, 不待內行, 經先入島受法, 推案具在. 而衆人泛言以江都失陷伏罪, 無能分別者, 亦異矣.】

준은 ‘안정성’이었고, 이는 빈궁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江船은 海船에 비해 크기가 작았고, 당시 건너고자 했던 곳은 바다였으므로, ‘크고 튼튼하여 항해에 적합한 배를 빈궁에게 양보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의도에 관계없이 김경징이 먼저 강화도에 상륙했던 것이고, 이것을 오해한 金時讓(1581~1643)이 한 말로 김경징이 처벌당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독자들이 김경징이 배려 차원에서 내행을 해선에 태웠음을 납득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적어도 자신은 내행과 동승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부검찰사가 검찰사와 권한을 싸워 이겨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항변이 숨겨져 있다. 이민구의 이와 같은 다중 포석은 동일 사항을 다룬 김시양의 글⁷⁵⁾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보인다. 후금과의 외교 문제로 정충신과 함께 병자호란 직전에 삭직당한 김시양은 김경징을 비롯하여 병자호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이 이민구가 김경징을 추궁한 여러 사람 가운데 굳이 김시양을 인용한 이유였다.

이민구는 이 협주를 통해 자신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김경징의 처벌 명목을 다시 환기시킨다. ‘강화도를 지켜내지 못한 잘못[江都 失陷]’이 아니라 “빈궁 일행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 버린 잘못[不待內行, 經先入島]”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 강도 수비의 책임자는 육군과 수군을 모두 틀어쥐고 있으면서 제대로 전투를 벌이지 못한 장신이었음을 기억하라고 암시하고 있다. 결국 김경징의 처벌 사유는 잘못된 것임을, 자신에게는 책임져야 할 잘못이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문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75) 金時讓, 『尙潭破寂錄』, 『大東野乘』, “尹昉·金慶徵等, 在道聞之人情惶懼, 趙翼託稱尋見其父通去, 嬪宮一行至江華海邊, 訛言虜兵且至, 金慶徵將其家屬卜馱先渡, 兩大君亦蒼黃得船以渡, 嬪宮大哭, 陪行承旨韓興一, 與副使李敏求艱得一船, 爲行計而夜已深, 且審虜之虛驚姑止, 以待明日, 尹昉奉廟社主宿通津, 故縣監蔡忠元不至, 嬪宮闕夕供, 興一得糧米于人, 煮粥以進, 慶徵安頓其家屬於江華城內, 聞嬪宮尙未渡, 日晚始乘船而來, 興一奉嬪宮渡津至江華.”

|참고문헌

1. 자료

李敏求, 『東州集』(이민구, 강원모·김문갑·오승준·정만호, 『동주집』, 한국고전번역원DB)

尹宣學, 『記江都事』, 『魯西遺稿』

羅萬甲, 『丙子錄』

李緯, 『三官記』

南汲, 『南漢日記』(남급 저, 신해진 역, 『남한일기』, 보고사, 2012)

李肯翊, 『煉藜室記述』

『仁祖實錄』

『顯宗改修實錄』

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하), 문학동네, 2010.

신달도·정양·윤선거 원저, 신해진 편역,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역락, 2012.

김창협 편찬, 신해진·김석태 역주, 『강도충렬록』, 역락, 2013.

이극성 지음, 장유승·부유섭·백승호 옮김, 『형설기문』, 성균관대출판부, 2016.

2. 논저

구범진,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과 청군의 전력」, 『동양사학연구』 141, 동양사학회, 2017(a).

_____, 「병자호란 시기 청군의 강화도 작전: 목격담과 조식·조류 추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전황의 재구성」,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b).

_____,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김영수·유명석, 「東州 李敏求의 『東遊錄』 研究」, 『民族文化研究』 68, 고려대 민

죽문화연구원, 2015.

- 김영주, 「東州 李敏求의 文學論 研究」, 『동방한문학』 제20집, 동방한문학회, 2001.
- 김일환, 「병자호란 체험의 ‘再話’ 양상과 의미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0.
- 김정녀,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인조의 기억과 ‘대항기억’으로서의 <강도몽유록>」,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원, 2010.
- 박수천, 「東州 李敏求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 부유섭, 「東州 李敏求와 南人詩脈의 전개」,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 오승준, 「東州 李敏求의 한시 연구 - 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41, 근역한문학회, 2015.
- 유명석, 「東州 李敏求의 交遊詩 研究-樂全堂 申翊聖과 東岡 許畝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3, 우리한문학회, 2015.
- _____, 「東州 李敏求의 詩文學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2017.
- 이군선, 「浦渚 趙翼의 「丙丁記事」 一考」,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018.
- 이남면, 「東州 李敏求의 生涯와 詩世界」, 고려대 석사논문, 2006.
- _____, 「아산의 유배문학: 李敏求의 『牙城錄』」, 『우리文學研究』 41, 우리문학회, 2017.
- 이민희, 「전란을 기억하는 한 방식으로서의 ‘극적 표현’과 전란 서사의 의미-강화 소재 병자호란 서사 「江都夢遊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 정환국, 「丙子胡亂時 江華관련 실기류 및 夢遊錄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3, 한국한문학회, 1999.
- 허태구,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 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 _____, 「『江都志』와 『重訂南漢志』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 검토」, 『규장각』 5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A study on the exodus of Lee Min-gu

Kim, Il-hwan

This study analyzes the letters of Lee min-gu sent to his friend Jung sae-gyu in his later years. In the form of response, Lee min-gu is demonstrating to his friend how his actions had been just and how it was his best when Gangwhado fell during Byeongja Ho'ran war. The examples he used to justify his actions mostly included people who had already passed away and cannot grant the truth or those who had been blamed just like himself. Though his words were sincere, his letters were adroit enough to escape from every suspicion. The first part was dedicated to explain why he did not return to his army as the enemy had landed on the shore. The latter part rebuts the suspicion that he did not depart from Gangwhado solely because of the safety, even though he was appointed as a governor of ChungCheongdo after the former governor had deceased while struggling to end the siege of Namhansansung Fortress. In the former part of the essay, he unconsciously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incidence and god's grace. The latter part, he wishes to get over the prestige of Kim Sang-hun's tomb inscription. Lee Ming-gu was obsessed with his past as his

opponents constantly casted doubt on his nomination on behalf of his personal history.

Key words: Lee Min-koo, Jung Sae-gyu, <a reply to Jung sae-gyu>, Byeongja Ho'ran war, Gangwhado, Kim Sang-hun.

김일환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hukong@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9월 15일 투고되어 2019년 10월 9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